

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안)

| | |
|----------|----|
| 의안 번호 | 57 |
|----------|----|

제출년월일 : 2003. 5. 27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사유

- 환경부지침에 따라 조례조항가운데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현의 수정 등이 필요한 조항 및 법령상의 용어와의 통일이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며
- 음식물류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다른 경우 자치단체간의 위탁계약 체결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내용등을 상호통보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처리도모와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점검의무를 규정하는조항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
-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은 적정처리시설을 갖춘자가 재활용토록하여 부적정처리를 예방(안제6조 1호)
- 감량의무사업장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를 한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변경신고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제7조의2 3호)
- 음식물류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자치단체간에 위탁계약 체결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내용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확보토록함(안제12조제4항내지 제5항)
-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의 관리·운영에관한 근거 마련(안제13조제3항)

3.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5조
-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준칙(환경부2002.11.)

부산광역시시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시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명 : “부산광역시시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부산광역시시하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로 한다

제2조제4호중 “원형그대로 ”를 “가축의 먹이로 ”로 하고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을 “ 재활용”으로 한다.

제3조본문“음식물쓰레기배출자”를 “생활계폐기물배출자”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지정고시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은 별표1과 같다”를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같이 정하여야 한다”라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 제목중 “(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처리방법 및 준수사항)” 을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방법등)” 으로 하고, 본문중 “의무사업장”을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으로 하며, “다음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은 “법제12조 및 동법시행령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로 한다.

제6조 각호를 다음과같이 한다

1. “다만”을 “이경우”로 하고,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2. “의무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이하 ”이하의무사업자가”를 “감량의무사업자는”으로 하고, “경우에는 별지제1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경우 위탁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단독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로 한다.
4. “재활용하거나”앞에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로하며 “봉투 또는 용기”를 “용기”로 한다.
5. 제5호삭제

기존제7조를 삭제하고 다음과같이 제7조를 신설한다.

제7조(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제1호서식의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자는 다음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8조제2항중 “아니한자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자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기준”을 “아니한자 또는 제7조의규정에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자에 대하여는 법제63조제3항제2호의규정”으로 하고

④ 동조제4항중 “의무사업장”을 “감량의무사업장”으로 하며, “지역에서는”을 “지역의 재활용 추진을 위하여”로 하고, “지원을 할수있다”를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음식물류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보관,수거,운반이 용이한 재질로”를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100세대”를 “20세대”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과태료”를 “법제 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음식물쓰레기”를 “법제13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부산광역시사하구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 관한조례별표2”를 “일반용봉투”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재생처리”를 “처리”로하고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적정재활용하는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하며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당해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등 당해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당해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등으로 영업을 정지되는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중 “의무사업장”을 “감량의무사업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③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의 관리·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같이 한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운영자, 음식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자에 대하여 그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2]과태료부과기준 제2호나목중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변경신고서포함)”라고 한다.

제1조·제2조제1호내지제6호·제3조·제4조제1항및제2항·제2조제1항및제2항·제6조제1항및제2항·제8조제1항,제2항및제4항·제9조제1항내지제3항·제11조제1항및제2항·제12조제1항내지제3항·제13조제1항및제2항·제14조중 “음식물쓰레기”를 각각 “음식물류폐기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쓰레기수집 · 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생활 폐기물중 <u>음식물쓰레기</u>의 수거체계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음식물쓰레기</u>”라 함은 식품의 생산 · 유통 · 가공 ·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 · 수 · 축산물류쓰레기와 먹고남긴 음식찌꺼기등을 말한다. 2. “<u>음식물쓰레기감량외무사업장</u>”이라 함은 규칙별표4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 “<u>음식물쓰레기감량화</u>”라함은 <u>음식물쓰레기</u>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u>음식물쓰레기재활용</u>”이라함은 <u>음식물쓰레기</u>를 원형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 · 퇴비 · 연료 및 기타용도로 <u>재생처리</u>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u>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u>”라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u>음식물쓰레기</u>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u>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u>”이라함은 <u>음식물쓰레기</u>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 · 퇴비 · 연료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p>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 · 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 -----<u>음식물류폐기물</u>----- -----</p>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음식물류폐기물</u>”----- ----- 2. “<u>음식물류폐기물</u> -----”----- ----- 3. “<u>음식물류폐기물감량화</u>”라-----<u>음식물류폐기물</u>----- ----- 4. “<u>음식물류폐기물</u>-----”이라함은 <u>음식물류폐기물</u>을 <u>가축의 먹이로</u>----- -----<u>재활용</u>----- ----- 5. “<u>음식물류폐기물</u> -----”라함은 -----<u>음식물류폐기물</u>----- ----- 6. “<u>음식물류폐기물</u> -----”라함은-----<u>음식물류폐기물</u>----- ----- |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3조(적용범위) 이조례는 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u>음식물쓰레기</u>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p> | <p>제3조(적용범위)----- ----- -----<u>생활계 폐기물</u>-----.</p> |
| <p>제4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등) ① 구청장은 <u>음식물쓰레기</u>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u>음식물쓰레기</u> 분리배출지역을 지정고시하여야 하며, <u>음식물쓰레기</u>의 배출방법은 별표1과 같다.</p> <p>② <u>음식물쓰레기</u>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방법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u>음식물쓰레기</u> 분리배출지역, 배출방법등을 따로 정한 경우 이를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p> | <p>제4조(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등) ①----- <u>음식물류폐기물</u>----- ----- <u>음식물류폐기물</u>-----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u>쓰레기수수료증량제</u>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u>별표1과같이</u> 정하여야 한다. ② <u>음식물류폐기물</u>----- ----- ----- ----- ----- <삭 제></p> |
| <p>제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u>음식물쓰레기</u> 배출방법)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u>음식물쓰레기</u>를 배출하여야 한다.</p> <p>1. <u>음식물쓰레기</u>는 배출하기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p> <p>2. <u>음식물쓰레기</u> 분리배출지역에서는 <u>음식물쓰레기</u>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p> | <p>제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u>음식물류폐기물</u>배출방법)----- ----- -----<u>음식물류폐기물</u>-----.</p> <p>1. <u>음식물류폐기물</u>----- ----- ----- ----- -----</p> <p>2. <u>음식물류폐기물</u>----- <u>음식물류폐기물</u>----- ----- -----</p> |

| 현행 | 개정안 |
|---|---|
| <p>제6조(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및 준수사항)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p> <p>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p> <p>2. 의무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제1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3. 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물의 수분함량기준을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맞게 감량하여야 한다.</p> <p>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봉투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p> | <p>제6조(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방법)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법제12조및같은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음식물류폐기물을-----</p> <p>1.-----음식물류폐기물-----</p> <p>-----이경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6조제3항제4호-----</p> <p>-----를 포함한다.</p> <p>2.감량의무사업자“는-----음식물류폐기물을-----경우위탁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p> <p>3.감량의무사업자가 -----단독또는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의하여 부산물의-----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p> <p>4.-----제1호의 규정에따라 재활용하거나-----용기에-----</p> |

| 현행 | 개정안 |
|---|---|
| <p>5. 의무사업자는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p> <p>제7조(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제외) 제2조제2호와 관련 식품위생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그영업에 필요한 단위업소별객석("객실을 포함한다"이하같다)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자중 다음각호의 1에 해당되는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대상에서 제외할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과자점형태의 영업 2. 객석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등의 전문점 <p><신 설></p> | <p><삭 제></p> <p><삭 제></p> <p>제7조(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지제1호서식의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현행 | 개정안 |
|--|---|
| <p>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①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하게 분리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자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폐기물수거를 거부할수 있다.</p> <p>③ <생략></p> <p>④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 <p>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자는 다음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수 있는서류 및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할수 있다.</p> <p>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p> <p>나.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위탁)을 변경한 경우다.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p> <p>제8조(음식물류폐기물----- -----)①-----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이----- ----- ②-----음식물류 폐기물-----아니 한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의한 준수사 항-----법제63조제3항제2호의규정-----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 무사업장-지역의 재활용추진을 위하여-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한다.</p> |

| 현행 | 개정안 |
|---|---|
| <p>제9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일반용봉투·공공용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p> <p>②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보관,수거, 운반이 용이한 재질로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종량제 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고 전면에 구의 문장, 봉투용량, 주의사항등을 표시하여야 한다.</p> <p>③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p> | <p>제9조(음식물류폐기물-----) ① 음식물류폐기물을담는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p> <p>② 음식물류폐기물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p> <p>③ 음식물류폐기물 -----</p> |
| <p>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① 음식물쓰레기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는 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설치하게 할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수 있다.</p> <p>②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수 있다.</p> <p>③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등의 조치를 명할수 있으며, 그명령을 위반한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p> | <p>제10조(음식물류폐기물-----)① 음식물류폐기물-----</p> <p>②-----20세대-----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p> <p>③ 음식물류폐기물-----</p> <p>법제63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p> |

| 현행 | 개정안 |
|--|---|
| <p>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u>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따로 정할수 있다.</u></p> <p>② <u>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별표2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수 있다.</u></p> <p>③ <생략></p> | <p>제11조(음식물류폐기물 -----) -----) ① <u>법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u>-----</p> <p>-----.</p> <p>② <u>음식물류폐기물</u> ----- <u>일반용봉투</u>-----</p> <p>-----.</p> <p>③ <현행과 같음></p> |
| <p>제12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u>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집·운반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u></p> <p>② <u>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법제13조제2항 및 영제6조의2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만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u>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규칙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절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u></u></p> | <p>제12조(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 ----- <u>음식물류폐기물이</u> -----</p> <p>-----.</p> <p>② <u>음식물류폐기물</u>-----</p> <p>----- ----- <u>처리</u>-----</p> <p>----- <u>제8조</u>-----</p> <p>----- <u>음식물류폐기물</u>-----</p> <p>----- <u>적정 재활용하는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u></p> |

| 현행 | 개정안 |
|--|--|
| <p>③ <u>음식물쓰레기</u>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u>음식물쓰레기</u>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p> <p>〈신설〉</p> <p>〈신설〉</p> <p>제13조(<u>음식물쓰레기</u> 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u>음식물쓰레기</u>를 사료·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p> | <p>③ <u>음식물류폐기물</u>----- ----- ----- ----- -----, <u>음식물류폐기물</u>----- -----</p> <p>④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u>음식물류폐기물</u>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등 <u>당해계약의 내용을 통보</u>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u>당해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경우에는 그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u> 하여야 한다.</p> <p>제13조(<u>음식물류폐기물</u>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 ① ----- - <u>음식물류폐기물</u> ----- ----- -----</p> |

| 현행 | 개정안 |
|---|--|
| <p>②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신설></p> <p>제14조(음식물쓰레기 적정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음식물쓰레기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반기별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p> <p>제15조(생략)</p> | <p>② 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음식물류 폐기물을----- ----- ----- -----</p> <p>③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p> <p>제14조(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류폐 기물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적정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p> <p>제15조(현행과 같음)</p> <p>부 칙</p> <p>제1조(현행과 같음)</p> <p>제2조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30일이 경과한날부터 시행한다.</p> |

[별표 2]

과태료부과기준

| 현행 | 개정안 |
|---|--|
| 부과항목 | 부과항목 |
| <p>1.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u>음식물쓰레기</u>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p> <p>가. <u>음식물쓰레기</u>를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p> <p>나. (생략)</p> <p>2. <u>음식물쓰레기</u>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자가 <u>음식물쓰레기</u> 배출방법등을 위반한경우</p> <p>가.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u>음식물쓰레기</u>를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경우</p> <p>나. <u>음식물쓰레기</u>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연간 <u>음식물쓰레기</u>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u>음식물쓰레기</u> 관련대장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p> <p>3 <u>음식물쓰레기</u>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자</p> | <p>1. -----<u>음식물류폐기물</u>-----</p> <p>가. <u>음식물류폐기물</u>을 -----</p> <p>나. (현행과 같음)</p> <p>2. <u>음식물류폐기물</u> -----</p> <p>-----<u>음식물류폐기물</u>-----</p> <p>가. -----</p> <p>-----<u>음식물류폐기물</u>-----</p> <p>나. <u>음식물류폐기물</u>-----</p> <p>--(변경신고서포함), --<u>음식물류폐기물</u>-----</p> <p>-----<u>음식물류폐기물</u>-----</p> <p>3 <u>음식물류폐기물</u> -----</p> |